

도시계획 일부변경및 신설결정

위치: 영등포구 여의도동일대

- 가. 업무지구 지정  
면적 283,350 평
- 나. 주차장 정비지구 추가  
추가면적: 84,000 평
- 다. 학교 결정  
4개교: 22,000 평
- 라. 종합의료시설  
면적: 18,300 평

기안용지

(전화번호 ) 권 결 규 정 크 호 / 방 부 시장 권 결 사 랑

시 장  
43월재  
4 10

기 관	도시정비국장	지역계획계장	법무담당관	시/국
	도시계획국장	지역계획계장	종합계획계장	부/청
			가로계획계장	국
기안책임자	권완	76.4.15	조	

경수참	유선조	각안참조	발신	봉	검별 1976.4.22
제 목	도시계획 (업무지구, 주차장정비지구, 학교, 종합의료시설)				

일부변경및 신설결정

제 1 안 내부결재

1. 여의도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도시계획 (업무지구, 주차장정비지구, 학교, 종합의료시설) 일부변경및 신설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 2항에 의거하여 대통령령 제 7754호 (75.8.22)로 행정전환 위임된 사항으로서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 에 의거 별안과 같이 이를 고시하고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 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. 본 사항은 당시 제5차 (76.3.23) 및 제6차 (76.4.9)

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, 심의 의결된 사항입니다. 6.4.9 제 9/1

제 2 안 고시안

서울특별시 고시제 호 287 제 1 차

도시계획 (업무지구, 주차장정비지구, 학교, 종합의료시설) 일부

변경및 신설결정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(업무지구 주차장 정비 지구 학교 종합의  
 (도시설)을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 및 결정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2  
 와 대통령령 제 7754호 <sup>행정</sup>원칙 위임 규정 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영등포구  
 시면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  
 게 한다.

1976. 4

서울특별시장

가. 업무지구 지정조서

지구명	위 치	면 적 (m <sup>2</sup> )	비고
여의도지구	국회 동측 중앙 상업 지역 일대	944,500	

나. 주차장 정비 지구 일부 변경조서

지구명	위 치	면 적 (m <sup>2</sup> )			비고
		당초	변경	변경후	
여의도지구	여의도 일대	1,487,000	증 280,000	1,767,000	

다. 학교 결정조서

시설명	위 치	면 적 (m <sup>2</sup> )	비고
고등학교	영등포구 여의도동 학 3-1	19,835	
중 학교	" " 학 2-1	16,529	
국민 학교	" " 학 1-1	11,670	
학 교	" " 1-350 일대	24,793	

라. 종합의료시설 결정조서

시설명	위 치	면 적 (m <sup>2</sup> )	비고
종합의료시설	여의도 동측	61,000	별첨

(별첨 도면 생략)

제 3 안

수 신 건설부장관

발신시장

제 목 동 건

1. 당시 도시계획 (업무지구, 주차장 정비지구 학교 종합의료시설) 일부 변경 및 신설 결정을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별첨  
고시문사본 및 도면 표시와 같이 고시하였기 보고합니다.

첨 부 고시문사본 및 도면 1 부

제 4 안

수 신 영등포구청장

발신시장

제 목 동 건

1. 도제 415-300호 (76.3.18)의 관련임

2. 귀구 관내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부지역에 대하여  
별첨 고시문사본 및 도면 표시와 같이 도시계획 (업무지구, 주차장 정비  
지구 학교 종합의료시설) 일부 변경 및 신설 결정 하였으니 귀구 바  
도면을 정리하는 등시 게시판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인 및 토지소  
자에게 보이게 하고 건축대지증명 등 제반 업무처리에 착오  
없기 바라며

3. 동지역내 아파트지구 및 고도지구에 대하여는 건설부  
장관에게 요청중에 있으니 결정 고시될 때 까지 이미 시달된  
여의도 정비계획에 의거 계속 건축 통제하기 바람

첨 부 고시문사본 및 도면 1 부

제 5 안

수 신 수신처장

발신과장

제 목 동 건

1. 도제 415-300호 (76.3.18)에 관련임

2. 당시 관내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부지역에 대하여 별첨  
고시문사본 및 도면 표시와 같이 도시계획 (업무지구, 주차장 정비지구  
학교 종합의료시설) 일부 변경 및 신설 결정 하였으니. 관련 업무에
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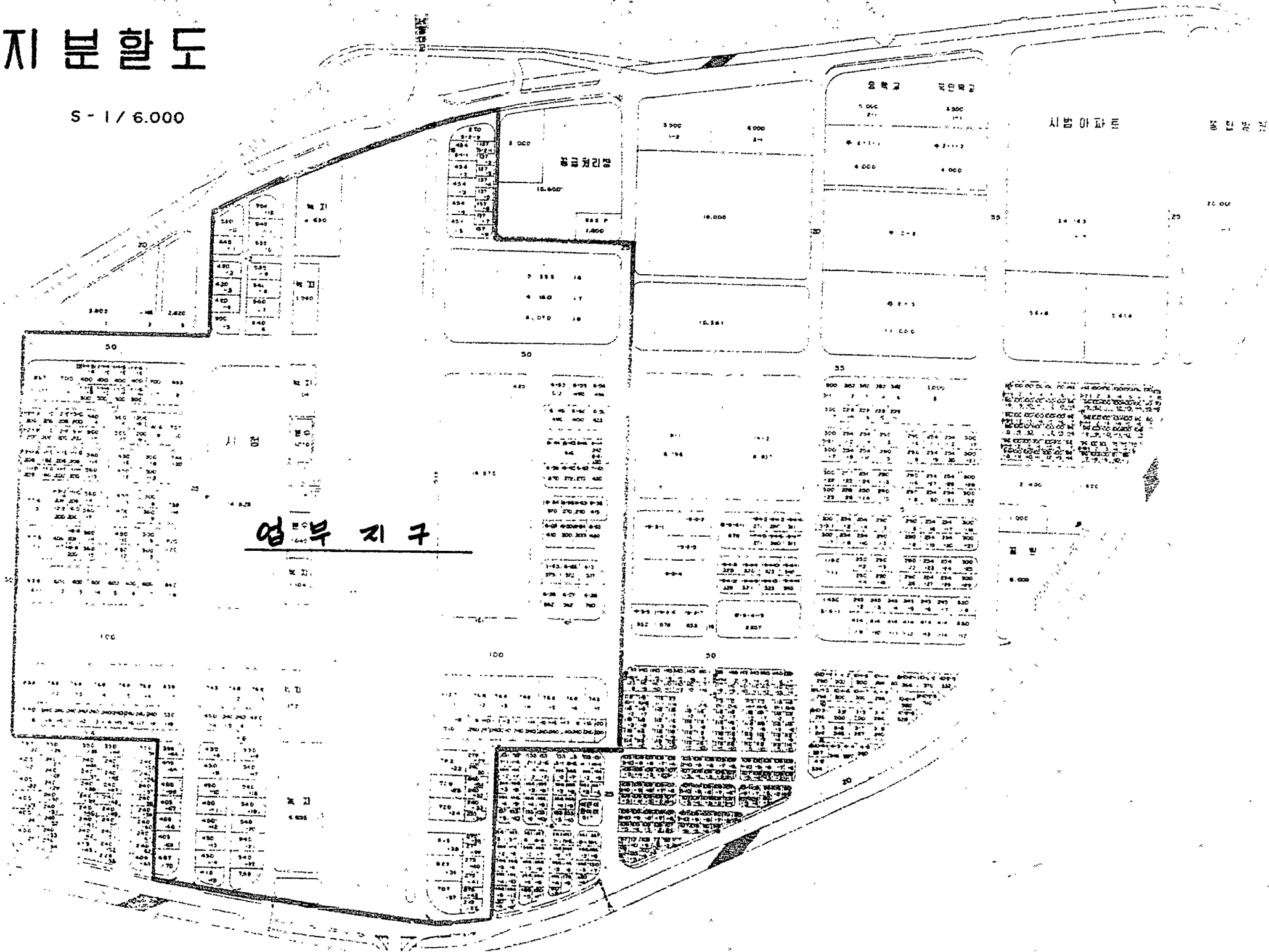
첨부 고시문사본 몇 도면 1부 끝

수신처: 건설지도과, 주택행정과, 환경과

결재  
1975. 4. 2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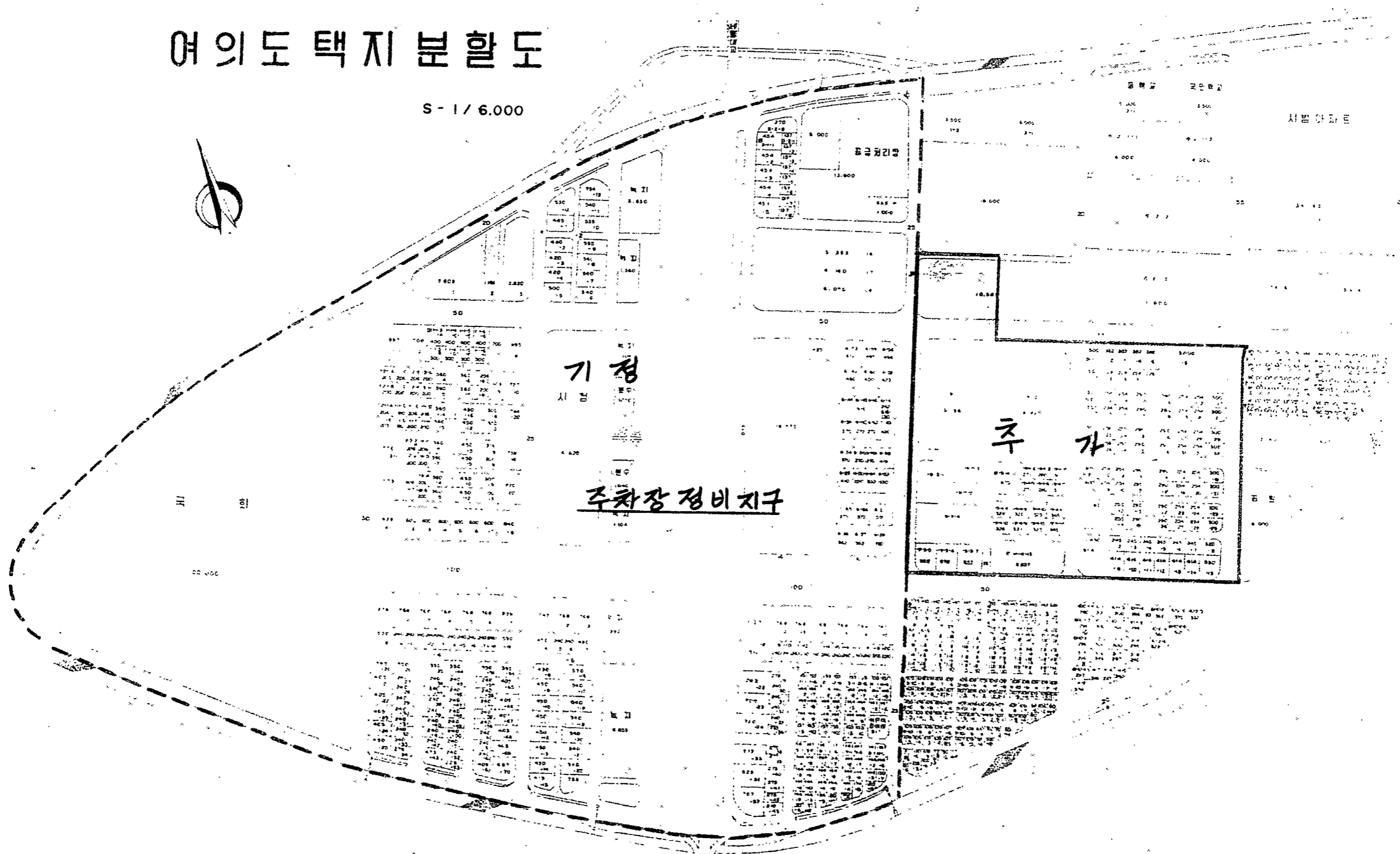
# 여의도 택지 분할도

S - 1 / 6.000



# 여의도 택지 분할도

S - 1 / 6.000



기정

시정

주거장 정비지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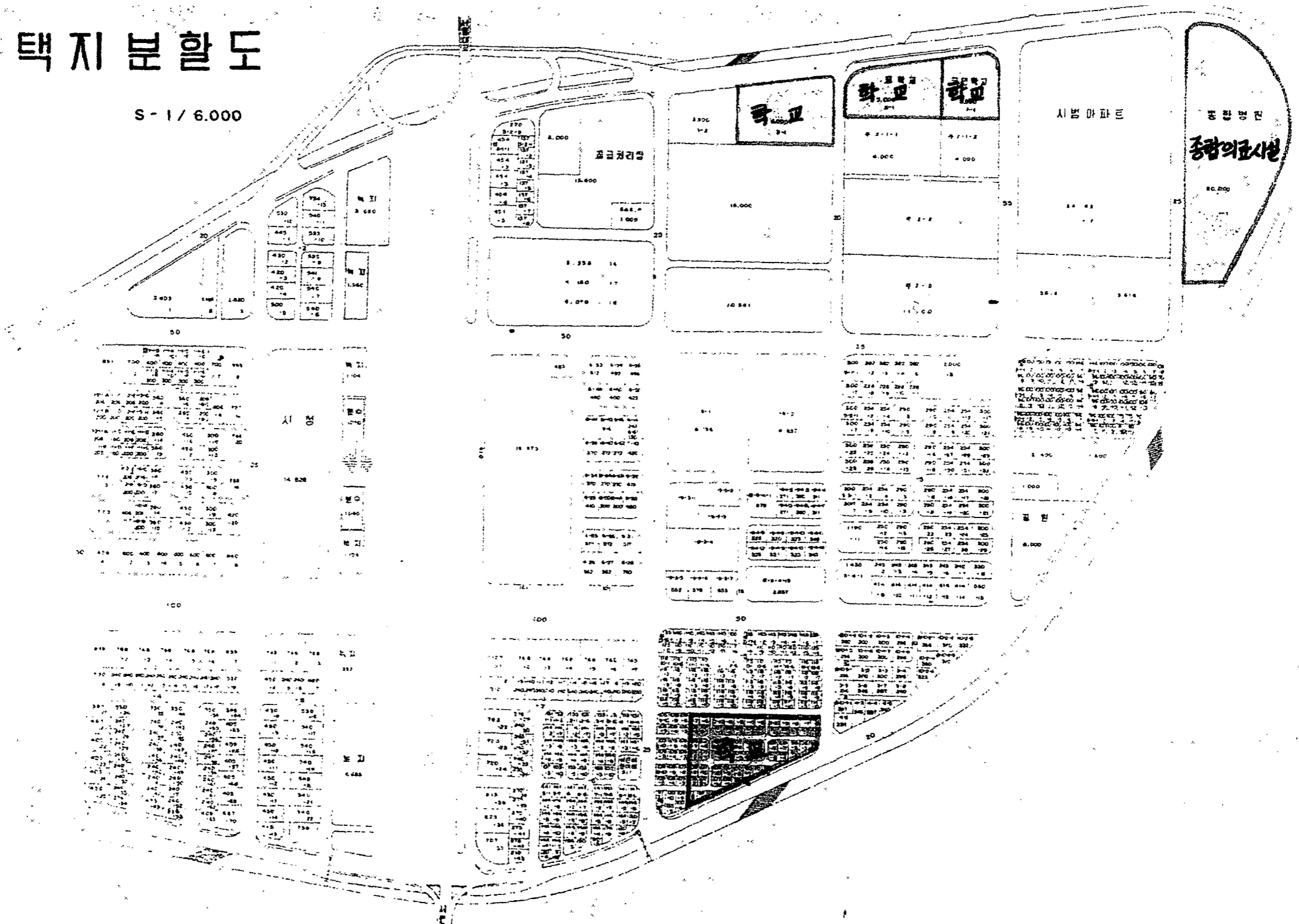
주거

서범아파트

비하

# 여의도 택지분할도

S - 1 / 6,000



III  
101  
100 1000